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07.6., 2010.11.16>

벌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전단관련)

해당법조문	범칙금 부과대상자	위반기간 등	범칙금의 기준액
1. 법 제93조의2제2항제1호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2.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3. 법 제93조의2제2항제3호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4. 법 제93조의3제1호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5. 법 제93조의3제2호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6. 법 제94조제1호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7. 법 제94조제2호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8. 법 제94조제3호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9. 법 제94조제4호	법 제12조의3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0. 법 제94조제5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5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1. 법 제94조제6호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2. 법 제94조제7호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3. 법 제94조제8호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4. 법 제94조제10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